

## 제요금 등 관리규정

## 제요금 등 관리규정 개정 연혁

	1983.07.01.	발령	제 7 호		신설
개정	2008.07.15.	발령	제 136 호		일부개정
개정	2012.02.01.	발령	제 176 호		일부개정
개정	2015.08.04.	발령	제 207 호		일부개정
개정	2016.01.01.	발령	제 215 호		일부개정
개정	2016.09.28.	발령	제 224 호		일부개정
제목개정	2017.03.07.	발령	제 235 호		일부개정
개정	2017.07.20.	발령	제 240 호		일부개정
개정	2018.03.30.	발령	제 248 호		일부개정
개정	2019.08.27.	발령	제 271 호		일부개정
개정	2021.12.31.	발령	제 308 호		일부개정
개정	2023.06.11.	발령	제 328 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	

# 제요금 등 관리규정

[시행 2021.12.31.] [제요금 등 관리규정 제308호, 2021.12.31. 일부개정]

[시행 2023.6.11.]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괄 개정 제328호, 2023.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사용대금” (이하 “제요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2.2.1., 2017.3.7.>

**제3조(제요금의 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수가는 법률로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② 일반환자는 요양급여 수가의 140%를 적용하여 받는다. <개정 1995.7.15., 2012.2.1. 2015.8.4., 2017.3.7.>

③ 입원실료(“기준병실료” 제외) 영안실사용료, 구급차사용료, 제증명수수료 등의 요금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2.2.1., 2017.3.7., 2017.7.20.>

1. 입원실료는 [별표1]과 같다.
2.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3.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4. 구급차 사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에 따른다.

**제4조(입원서약서)**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가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15., 2008.7.15., 2018.3.20.>

**제5조(제요금의 징수)** ① 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5, 10, 15, 20, 25, 30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7.15>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퇴원일의 입원실료는 입·퇴원시간에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며 전과 또는 입원실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 삭제** <2021.12.31.>

**제7조(취약계층 등 제요금의 지원)** ①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소외계층의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별표 4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6.1.1., 2017.3.7.>

1. 삭제 <2017.3.7.>

2. 삭제 <2017.3.7.>

3. 삭제 <2017.3.7.>

② 제1항의 제요금을 지원할 때에는 각 호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5.8.4., 2016.09.27., 2017.3.7.>

1. 별지 1호의 추천·의뢰서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의료급여보험증, 건강보험(차상위) 보험증 사본. 단,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주민등록 등본(가족사항 파악자료 필요 시)

4. 소득증명원(건강보험공단 보험료납입 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원 등)

③ 취약계층 진료지원의 범위는 각호와 같다. <신설 2017.3.7.>

1. 외래 : 의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동일 상병으로 계속해서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경우 해당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

2. 입원 : 연간 3회 이내.

3.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 본인요청에 의한 항목(상급병실료,

영양제, 간병료, 비보험MRI, 건강검진, 보호자 식대 등)과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음.

4. 외래 및 퇴원환자 이송지원. 단, 요양원 및 요양병원으로 귀가하는 자에 한함.
  5. 별표 4의 제17호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비급여 진료비 20%를 지원하고 해당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검진(추가선택 검사),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예방접종,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안치실, 접객실, 분향실)에 한함.
- ④ 제1항의 지원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진료비 등 감면요청서)의 서식에 의거 제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 환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2. 직원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 직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3. 의료분쟁 심의규정에 의거 진료비 등 감면 심의·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7.3.7.]

#### 제8조 삭제 <2015.8.4.>

**제9조(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보험회사 기타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촉탁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종료 후에 해당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보험, 공단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7.)

제1조(시행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괄 개정 정관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원실료 <신설 2017.3.7.>, <개정 2019.9.1.>

(단위 : 원)

구분	1인실	2인실
입원실료	100,000	20,000

[별표 2]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신설 2017.3.7.>, <삭제 2017.7.20.>

[별표 3] 장례식장 사용료(제3조제3항제3호) <신설 2017.3.7.>

(단위 : 원)

구분	의전실		접객실			기준
	특실	일반	A형 110㎡	B형 90㎡	C형 48㎡	
안치료	2,700					시간당
의전실료	5,600	4,800	/	/	/	
접객실료	/	/	12,500	10,000	6,500	
염습료	50,000					구당
염습실사용료	200,000					

[별표 4] 취약계층 지원대상 기준 <신설 2017.3.7.>

대상자	지원규모	대상내역
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4.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5.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8.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9.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0.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2.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13. 기타 취약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기청소년 등 지역소외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4. 원내등록환자		생계문제로 계속(연속) 진료에 곤란을 겪는 환자로서 담당 주치의의 의뢰를 받아(소견서 첨부) 공공의료팀 등록을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한 사람
15.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총액의20%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16. 용역직원, 공익요원, 등록자원봉사자		본인부담금총액 및 장례식장 사용료의 50%
17. 협약체결 기관		의료원과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



[별지 2] 진료비 감면 요청서 <신설 2021.12.31.>

## 진료비 감면 요청서

결 재	팀장	과장	원장

수신	원무과장	유형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그 외 환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료비 감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면사유	<input type="checkbox"/> 환자안전 사고 <input type="checkbox"/> 진료사고 배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환자 관련 사항	환자명		병록번호		
	진료과		진료의사		
	발생일시		치유일		
구체적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감면 사유와 내용 등 상세히 기재					
<input type="checkbox"/> 감면요청 사유 :          					
<input type="checkbox"/> 감면요구 내용 :          					
위와 같이 진료비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과(팀)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환자의 진료비 감면을 제요금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 요청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